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 
번호

1227

제출년월일 : 2006. 11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7846호, 2006.1.11공포·시행), 동법 시행령(대통령령제19566호, 2006.6.29공포, 2006.7.1시행)이 개정·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·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·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종로구 주민이 조례의 제·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입법예고(2006.10.27~11.16)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주민의 조례 제·개폐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례의 제·개폐 청구)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 주민이 조례의 제·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